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13.(수) 08:00 < 12.13.(수) 석간 > 배포 2023. 12. 12.(화)

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

-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('24년)
-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(21 → 10개월)
- 니켈·리튬 등 핵심광물 정·제련 필수 기술을 「조특법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 검토

정부는 12월 13일(수) 08: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「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였다.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프레이션 감축법(IRA), 유럽연합(EU)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,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우선,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'24년 마련하고, 사용 후 배터리(재제조)를 탑재한 전기차, 재사용 제품(ESS, UAM 등)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·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(❶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-❷유통 전 안전검사-❸사후검사) 체계를 도입한다.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·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'폐기물'이 아닌 '제품'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.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·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(30→180일)하고,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.

아울러,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, 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'전기이륜차'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「전기사업법」 상 전기 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.

또한, 광업권·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투자·취득액의 3%)를 '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, 니켈·리튬 등 핵심광물 정·제련 필수 기술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.

마지막으로, 광물·소재·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(全) 분야에 향후 5년간('24~'28년)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, 지난 11.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'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'('24~'28년, 1,172억원)를 '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(R&D)에 '24년 총 736억원('23년 대비 +31%)을 투자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	책임자	과 장 신용민 (044-203-4260)
			담당자	사무관 이기헌 (044-203-4266)
	기획재정부	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혜영 (044-215-4550)
			담당자	사무관 전성준 (044-215-4551)
				사무관 김정아 (044-215-4552)
				사무관 심민준 (044-215-4553)
<핵심광물 확보 · 비축>	산업통상자원부	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(광물자원팀)	책임자	팀 장 정대환 (044-203-5259)
			담당자	사무관 정주환 (044-203-5256)
	기획재정부	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	책임자	과 장 이진민 (044-215-7870)
			담당자	사무관 오서정 (044-215-7871)
<특허 심사기간 단축>	특허청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 박진환 (042-481-5051)
			담당자	서기관 박진아 (042-481-5978)
	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	책임자	과 장 신동환 (042-481-8321)
			담당자	사무관 이수한 (042-481-8243)
<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>	산업부	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 이규봉 (044-203-4270)
			담당자	사무관 문경준 (044-203-5253)
		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 장 이영호 (044-203-4430)
			담당자	사무관 안근영 (044-203-4409)
<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>	기획재정부	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혜영 (044-215-4550)
			담당자	사무관 심민준 (044-215-4553)
	산업통상자원부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	책임자	과 장 신용민 (044-203-4260)
			담당자	사무관 이기헌 (044-203-4266)
	환경부	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	책임자	과 장 이정미 (044-201-7380)
			담당자	사무관 김형래 (044-201-7384)
	국토교통부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17)
			담당자	사무관 홍예표 (044-201-3846)
<R&D 지원>	과학기술정보통신부	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	책임자	과 장 이은주 (044-202-4540)
			담당자	사무관 심성은 (044-202-4513)
	산업통상자원부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	책임자	과 장 신용민 (044-203-4260)
			담당자	사무관 김정훈 (044-203-4263)
	환경부	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	책임자	과 장 이정미 (044-201-7380)
			담당자	사무관 김형래 (044-201-7384)

<금융지원>	기획재정부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심현우 (044-215-7610)
			담당자	사무관 정석환 (044-215-7612)
	산업통상자원부	무역정책관 수출입과	책임자	과 장 이창훈 (044-203-4040)
			담당자	사무관 노승구 (044-203-4049)
	중소벤처기업부	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상천 (044-204-7700)
			담당자	사무관 윤성웅 (044-204-7703)
	금융위원회	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남동우 (02-2100-2860)
			담당자	사무관 양병권 (02-2100-2861)
<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구독서비스>	기획재정부	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	책임자	팀 장 이재화 (044-215-4581)
			담당자	사무관 홍혁준 (044-215-4584)
	산업통상자원부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 최보선 (044-203-4320)
			담당자	사무관 박준하 (044-203-4327)
<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 포함>	산업통상자원부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 최보선 (044-203-4320)
			담당자	사무관 박충희 (044-203-4329)
<전기이륜차 내용연수 마련>	조달청	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 박재영 (042-724-7164)
			담당자	사무관 성세훈 (042-724-7046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」 주요내용

〈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〉

1 **사용 후 배터리**(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) **산업생태계**의 **체계적 육성**을 위한 **지원법** 마련('24)

< 사용 후 배터리 용도 구분 >

- **(재제조)** 수리·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**전기차용**으로 활용
- **(재사용)** 수리·부품 교체 후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전기차 외 용도**로 활용
- **(재활용)**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후 **리튬, 니켈 등 유가금속**을 회수

2 **사용 후 배터리**에 대한 **3단계 안전점검**으로 **전기차·제품 신뢰성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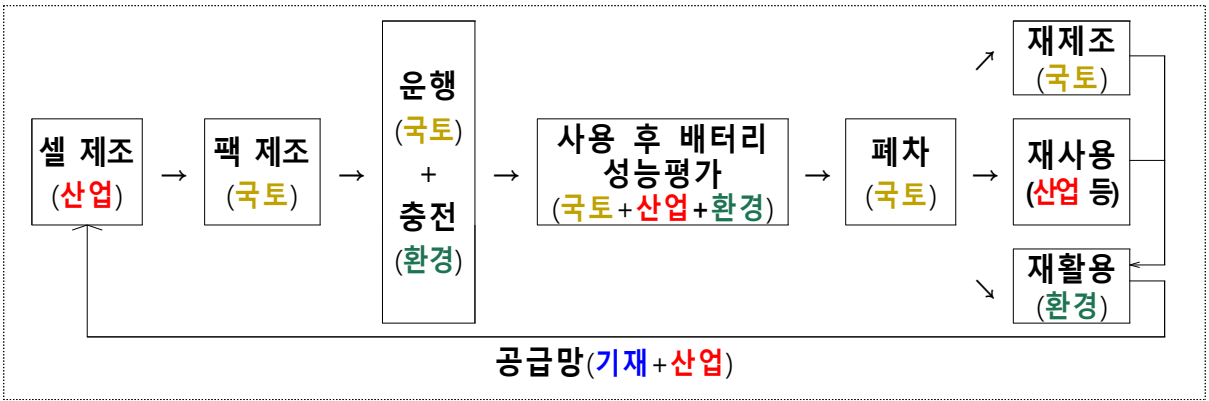
❶ **(성능평가)** 배터리 탈거 전 **활용 용도 구분**으로 **재제조·재사용 용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'폐기물'이 아닌 '제품'으로 인정**

❷ **(유통 전 안전검사) 재제조·재사용 배터리**를 탑재한 **전기차·제품**(드론, 선박 등)의 **안전한 작동 여부** 등 검사

❸ **(사후검사) 사용 후 배터리** 탑재 **전기차·ESS**의 **지속적인 안전성 확보** 및 **품질 유지** 검사

3 **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**를 위한 **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** 및 배터리 활용 각 단계별 **정보입력 의무 법제화**

<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 >



< 각 단계별 입력 정보 예시 >

단 계	입력 의무 정보 예시
배터리 제조 단계	▪ 재생원료 사용 비율 ▪ 배터리 식별번호·전기차 차대번호, 제조일자 등
배터리 운행 단계	▪ 회수 사유(파손, 결함 등), 회수 배터리 정비·리콜 이력 등
배터리 순환이용 단계 (재제조·재사용·재활용)	▪ 회수 사용 후 배터리 개수 및 성능평가 결과 ▪ 사용 후 배터리 분리·보관 현황 ▪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 판매 결과(개수, 단가 등) ▪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·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결과 ▪ 회수된 광물 종류·중량, 기타 폐기물 처리 결과 등

<규제혁신>

4 **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** 도입, **고숙련 전문 심사인력 확대** 등을 통해 **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**(現 약 21개월 → 10개월)

*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같이 「특허법」 시행령에 근거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심사기간 단축('24.1월 시행)

5 **전기자동차 정의**에 **전기이륜차**를 **포함**[1]하여 **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**를 「전기사업법」 상 **전기자동차 충전사업**으로 **인정**[2]

1」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 개정('24.上)
2」「전기사업법」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 절차 등 규정 미적용

6 **공공부문**의 **전기이륜차 전환 촉진**을 위하여 **전기이륜차**의 **내용연수 규정** 마련(조달청 고시 「내용연수」 개정, '24.上)

<세제지원>

7 **광업권·조광권 취득**을 위한 **해외 자원개발 투자***에 대한 **세액공제** (투자·출자액의 3%) **도입**('24년)

* 광업권·조광권 취득 투자 및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 출자, 외국자회사 해외직접투자

8 **니켈·리튬** 등 **핵심광물 정·제련 필수 기술**을 **「조세특례제한법」** 상 **신성장·원천기술**로 **지정 검토**

※ 「'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」에서 발표('24.1월 초)

<R&D · 금융지원 등>

9 **광물·소재·완제품** 등 **이차전지 산업 全분야**에 **향후 5년간** ('24~'28년) **총 38조원 이상*** **정책금융 지원**

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기술보증기금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계획

10 **'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'*** **추진**('24 ~ '28년, 1,172억원)

* ❶전기차용 900Wh/L급 고안전성 황화물계 전고체 이차전지, ❷전기차용 900Wh/L급 고성능 리튬-메탈 이차전지, ❸도심항공용 400Wh/kg급 초경량 리튬-황 이차전지 개발